

대덕 기업지배구조 헌장

Daeduck Corporate Governance Charter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정신)

대덕은 경영이념인 “공동운명체”, “고객지향”,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주주, 고객,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증진 및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대덕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제2장 주주

제2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대덕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정기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② 합병·정관의 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 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주에게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그 지배권을 남용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고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와 특별한 주주를 제외하고는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이사회

제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실질적인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경영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 경영에 대한 감독과 성과의 평가
-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 사업계획, 투자, 예산 등 중요 경영 의사결정
-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 (이사회의 구성)

회사는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이사의 자격)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이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회사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에게 중과실이나 악의가 있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의 유치를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9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회사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및 보상)

경영진과 사외이사, 이사회 등의 경영 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 결과는 보수와 재선임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다. 특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1조 (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4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

- ①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토
 - 재무활동에 대한 건정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주주 · 고객 · 임직원 · 협력사 ·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6장 공시

제15조 (공시 의무)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